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10. 20.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616호로 2025년 10월 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영등포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기능 구체화 [안 제3조]
- 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 조항 신설 [안 제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 가능성 없음

- 3)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가능성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 법령
- 라. 입법예고(2025. 8. 28.~ 9. 17./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 근거 규정이 신설(2021.6.)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시행(2022.12.)됨에 따라 본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됨.
- 주요내용
 - 안 제1조의 위임의 근거 법령에 「지방공무원법」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의 근거 법령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지방공무원법」으로 변경함.
 - 안 제3조는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 안 제4조에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검토 결과
 -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¹⁾에 적극

1)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행정 지원제도의 근거가 법률에 신설되어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되었음.

- 이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징계, 민사소송, 형사 수사단계에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고 재직 공무원 뿐 아니라 퇴직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²⁾됨.
-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상위 법령 및 대통령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의 근거 법령 추가,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정 전	개정 후
▶ (지원 여부)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대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재량사항 으로 규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원 여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을 의무사항 으로 규정 (지원을 해야 한다)
▶ (지원 대상) 재직 공무원 에 한해 소송 등 대응 관련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재직 중의 업무로 발생한 소송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 공무원 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 세부사항) 관련 규정 없음	▶ (지원 세부사항) 지자체 규칙에 위임

하는 것으로써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적극행정 운영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위반 사항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³⁾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칙 제정 시 구체적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3)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참 고 자 료

1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10. 20.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617호로 2025년 10월 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획재정국 징수과 소관 ‘선정 대리인 관련 업무’를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부터 제8조까지)을 이관 신설

- 1)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제5호 신설)
- 2) 선정 대리인을 신청한 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1조 신설)
- 3) 선정 대리인의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2조 신설)
- 4)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3조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62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5.8.28. ~ 9.17./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¹⁾가 개정('24.12.31.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종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편입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 종합의견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영세한 납세자가 불복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 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임.

1)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그동안 우리 구(區)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관련 규정을 두어 기획재정국 징수과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이를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에 이관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집행기관에서는 소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해당 업무 및 관련 예산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참 고 자 료

1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채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